

#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제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3. 4. 15)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3. 3. 4
- 나. 제출자 : 사천시장
- 다. 회부일자 : 2003. 3. 4(의안 제 7호)
- 라. 심사일자 : 제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3. 3. 19)  
제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3. 4. 11)

## 2. 제안이유

- 가.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인상 및 요금체계 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하수도사용요금 인상과 누진구간을 조정하고 업종을 통·폐합하며,
- 나. 관련 법률의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함.

## 3. 주요골자

- 가. 하수도사용요금율표의 구간을 개편하고 요금을 전체평균 30% 인상조정 (안 제10조제2항 별표 1)
- 나. 하수도사용료업종별구분표상 업무용, 영업용, 옥탕2종을 일반용으로 통합하고, 옥탕1종을 대중탕용으로 명칭 변경과 일부 업종구분 내용도 변경 (안 제10조제2항 별표 1-1)
- 다. 건설업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법률의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내용과 산정방식을 개정 (안 제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5조제2항 별표 4)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 가. 하수도사용료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2004년까지 원가 수준으로 현실화 하여야 하나 현재의 수준으로는 맞추기 어려워 부득이 하게 전체 평균 30%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며,

나. 업종 통폐합은 업종별로 평균요금의 격차가 심하고 업종별 요율적용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고,

다. 누진요율체제의 실시근거는 절수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나 현재와 같이 절대적으로 낮은 하수도 요율체제하에서는 누진요율제에 의한 절수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없어 이를 개선하는 것임.

라. 원인자부담금을 개정하는 것은 다음 사유에 의거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봄.

① 원인자 부담금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주민의 부담을 줄여 주는 것으로 권장할 만 하나 개정안과 같이 줄이더라도 다른 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아 이를 더 인하시킬 필요가 있다고 봄.

타 시의 예를 보면 톤당 마산 1,104,000원 진주 1,005,000원 창원 1,103,000원등 우리시가 개정하려고 하는 1,583,000원 보다 훨씬 저렴하게 되어 있음.

집행부에서 더 낮추지 못하는 이유로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이는 정책의지 여부와 기술적 분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므로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봄.

②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을 근거로한 원인자부담금은 2002년도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것으로 종전에 없던 부담을 주민에게 지워 작년부터 건축주로부터 불만의 대상이 되어 온 시책임.

③ 따라서 이 부분을 그대로 원안 통과시킬 시 새로이 편입되는 사천읍하수종말처리시설 지역 및 기존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예상된다.

④ 타 시보다 높은 이유로 최근 처리장 건설로 인한 공사비 증가를 들고 있으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양의 하수를 내어보내는데 부담금을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이 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임

⑤ 따라서 원안으로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볼 수 있는 주민의 불이익을 무릅쓰더라도 이번 개정을 기회로 이 문제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봄

마. 따라서 동 안건은 원인자부담금 부분에 개념 정리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므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봄.

## 5. 질의 및 답변요지

- 타 시보다 원인자부담금이 고액인 이유는?
  - 우리 시 하수처리장건설비용이 타 시에 비하여 높기 때문임.

## 6. 토론요지

- 이연성 의원 : 원인자부담금이 타 시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안 제 15조를 첨부안과 같이 수정토록 동의

##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 정 안

원 안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5조(원인자부담금) ①  <u>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u>  <u>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u>  <u>도(하수관거 및 펌프시설,</u>  <u>하수종말처리장시설)의 신</u>  <u>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u>  <u>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u>  <u>지비(지장물보상비 포함),</u>  <u>공사비(부대공사비 포함),</u>  <u>시공감리비, 기타부대비로</u>  <u>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u>  <u>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u>  <u>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u>  <u>하수관거 설치비로 한다.</u></p>	<p>제 15 조 ( 원 인 자 부 담 금 )          ① 법 제 32 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하          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          으로 산정한다.</p>	<p>제 15 조 ( 원 인 자 부 담 금 )          ① 법 제 32 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하          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          의 75%로 산정한다.</p>